



제 438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임미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8023호)

2026. 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이 현 중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방제사업의 설계·감리 및 시공 주체에 나무병원 추가	2
IV. 입법의 재정영향	10

I.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임미애의원 등 11인

나. 제 안 일 : 2026. 4. 1.

다. 회 부 일 : 2026. 4. 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설계·감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수행은 산림사업법인, 국유림영림단 또는 산림조합에 위탁할 수 있고, 설계·감리업무는 산림기술사, 산림전문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에 필요한 수목병해충 진단·처방 및 약제 기반 치료에 관한 전문성을 보유한 나무병원이 이러한 방제사업의 수행과 설계·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의 설계·감리 및 수행 주체에 「산림보호법」상 등록된 나무병원을 포함함으로써 방제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8조의3제2항제4호 및 제8조의4제1항제4호 신설).

Ⅲ. 검토의견

1. 방제사업의 설계·감리 및 시공 주체에 나무병원 추가

개정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방제사업의 설계·감리 및 시공을 하려는 경우 위탁·대행하게 할 수 있는 자에 ‘「산림보호법」에 따라 등록한 나무병원’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3제2항제4호 및 제8조의4제1항제4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의3(방제사업의 설계·감리)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설계·감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 3. (생략) <u><신설></u> ③ ~ ⑥ (생략)	제8조의3(방제사업의 설계·감리)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1. ~ 3. (현행과 같음) 4. 「산림보호법」에 따라 등록된 나무병원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8조의4(방제사업의 대행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방제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방제	제8조의4(방제사업의 대행 등) ① ----- ----- ----- ----- -----

현행	개정안
사업을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 3. (생략) <u><신설></u> ② ~ ④ (생략)	----- -----. 1. ~ 3. (현행과 같음) 4. 「산림보호법」에 따라 등록된 나무병원 ② ~ ④ (현행과 같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방제사업의 설계·감리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설계·감리에 관한 계약 체결을 위한 입찰공고(입찰공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을 말한다)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방제사업의 대행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방제사업의 대행에 관한 계약 체결을 위한 입찰공고(입찰공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을 말한다)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가. 나무의사(병원) 제도 및 입법 배경

「산림보호법」에 따라 나무의사는 수목진료(수목의 피해를 진단·처방하고, 그 피해를 예방·치료)를 담당하는 전문가를 의미하고, 수목진료 사업은 시·도지사에게 기준을 갖추어 등록한 나무병원만이 수행할 수 있음.

나무의사(병원) 제도는 기후변화와 국제교류 확대로 수목 피해양상이 다양해지면서 아파트, 공원 등 생활권 수목의 관리 수요는 증가하였으나, 수목병해충 방제가 주로 비전문 실내소독업체 등에 의해 이루어지면서 부적절한 약제 살포 등 국민안전에 위협하는 요소가 산재함에 따라,

전문화된 수목진료체계 구축에 대한 정책추진 요구가 증가하여 나무의사 국가자격을 도입하는 내용의 산림보호법 개정('18.6.28. 시행)으로 도입됨.

제도 도입 이후 현재('26.3월말 기준)까지 배출된 나무의사는 1,737명이고, 등록된 나무병원 수는 1,015개소로 파악됨.

이처럼 「산림보호법」에 따른 나무의사 및 나무병원 제도가 도입되어 수목진료 전문인력이 양성되고 있으나, 현행법상 방제사업의 설계·감리 및 시공 주체에 포함되지 못해 전문성 활용이 제한되는 실정이므로,

개정안은 수목병해충 진단·처방 및 약제 기반 치료에 관한 전문성을 보유한 나무병원을 방제사업의 수행과 설계·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나. 개정안 관련 산림청 및 단체 의견

산림청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의 특성 및 현행 역할체계를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은 이유로 나무병원을 설계·감리 및 수행 주체에 포함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첫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는 현행법 및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계·감리·시공 등 단계별 역할이 구분된 체계로 운영되고 있어, 나무병원을 설계·감리 및 시공 주체에 포함할 경우 기존 업역과의 정합성 및 역할체계와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법률별 사업수행 역할 비교 】

구분	① 진단·처방	② 설계	③ 감리	④ 시공, 치료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없음	산림기술자 (산림기술용역업자) *제2조제6호, 제15조제1항	산림기술자 (산림기술용역업자) *제2조제6호, 제15조제1항	산림기술자 (산림사업시행업자) *제2조제7호
소나무재선충 방제특별법	지자체, 산림환경연구소, 국립산림과학원 등 공공기관 → 검경기관 진단 (처방없이 설계) *제7조제1항 및 제3항	기술사 엔지니어링사업자 산림조합중앙회 → 산림기술자 *제8조의3제2항	기술사 엔지니어링사업자 산림조합중앙회 → 산림기술자 *제8조의3제2항	산림사업법인 산림조합 국유림영림단 → 산림기술자 *제8조의4제1항
산림보호법	나무의사 *제2조제6의2호, 제2조제6의3호	없음	없음	나무병원 *제2조제6의4호 제2조제6의5호

※ 자료: 산림청

또한, ‘수목진료 사업’과 ‘소나무재선충병 사업’은 서로 영역이 구분되어 있어, 기존 업역과 관련한 단체 간의 마찰이 발생할 수 있음.

둘째, 개별 수목 중심의 수목진료(개체목에 대한 진단과 처방, 피해예방 및 치료) 방식과 검경기관(국립산림과학원 등 공공기관)의 검경 결과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으로 병명이 판명된 산림을 대상으로 하는 집단 방제사업 간 수행체계 차이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개정안과 관련하여서는 (사)한국나무의사협회의 찬성의견과 한국산림기술인회, (사)한국산림기술사협회 및 한국산림엔지니어링협회의 반대 의견이 제출되어 있음.

(사)한국나무의사협회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확산 상황을 고려할 때 기존 방제체계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전문 인력인 나무병원을 공공 방제체계에 활용하여 전문성 및 대응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반면, 한국산림기술인회, (사)한국산림기술사협회 및 한국산림엔지니어링협회는 개정안이 현행 산림사업의 업역 분리 원칙을 훼손하고 책임 체계 혼선을 유발할 수 있으며,

소규모 인력 중심의 수목진료에 한정된 나무병원은 대규모 방제 수행역량에 한계가 있고, 기존 등록기준을 충족한 사업자와의 형평성 저해, 산림사업 품질 저하 및 법체계 간 혼선이 우려되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 개정안 관련 단체 찬·반의견 】

구분	단체명	의견
찬성	(사)한국나무의사협회	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는 단순한 벌채사업이 아니라 병해충 진단, 확산 경로 분석, 예방 및 처방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영역으로 설계·감리 단계부터 나무의사 등 전문 인력 참여 필요성이 제기 ② 최근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확산 상황을 고려할 때 기존 방제체계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나무병원 참여 확대를 통해 전문성 및 대응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③ 국가가 양성한 나무의사 및 나무병원 인력을 공공 방제체계에 활용하는 것은 전문성 제고 및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측면에서 합리적인 제도 개선으로 판단
반대	한국산림기술인회 (사)한국산림기술사협회 한국산림엔지니어링협회	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은 설계·감리·시공이 분리된 산림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나무병원을 설계·감리 및 수행 주체에 포함할 경우 이러한 업역 분리 원칙이 훼손되고 역할 중복 및 책임체계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② 나무병원의 법적 의무는 「산림보호법」상 수목 진료(진단·처방·치료)에 한정되는 반면, 소나무재선충 방제는 벌채·파쇄·훈증 등 산림공학 기반의 대규모 방제사업으로 업무 범위를 초과하는 측면이 있어 수행 주체로서의 적합성에 한계가 있음 ③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는 국가적 산림재난 대응사업으로 광범위한 산림을 대상으로 다수 인력과 장비가 투입되는 사업인 반면, 나무병원은 소규모 인력 중심 구조로 대규모 방제 수행 역량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 ④ 현행 산림사업은 산림기술자 확보 등 엄격한 등록 기준을 충족한 사업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나무병원을 포함할 경우 이러한 기준을 우회하게 되어 업역 간 형평성 저해 및 산림사업 품질 저하 우려 ⑤ 또한 산림기술 체계에 포함되지 않은 주체를 설계·감리 및 수행 주체에 포함할 경우 법체계 간 정합성 저해 및 제도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

다. 검토의견

현행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체계는 별도의 수목진료(개체목에 대한 진단과 처방) 없이 산림환경연구소, 국립산림과학원 등 공공기관(검정기관)의 검정 후 그 결과에 따라 방제사업에 대한 설계·감리·시공이 추진되어 별도의 진단·처방이 불필요한 구조이며,¹⁾ 「산림보호법」상 수목진료(진단·처방·치료)는 나무병원만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음.

【 수목진료(나무병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대비표 】

구분	수목진료 제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법적근거	산림보호법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도도입	2018년 시행	2005년 특별법 제정
도입목적	생활권 수목 진단·치료 전문화	소나무림 보호, 재선충병 확산 차단
관리대상	개별 수목	단목 또는 집단 발생지
사업목적·주요업무	수목 건강 유지 수목진료 중심 진단·처방·치료	피해 확산 방지 재선충 피해목 방제 중심 감염목 제거·확산 차단
사업수행 방식	①진단·처방→ ②치료 *나무병원만 진단·처방·치료 단독 가능	①예찰·검정→ ②설계·감리→ ③시공 *①공공기관, ②~③설계·감리/시공 분리원칙
인력구조 ²⁾	소규모(나무의사 2명 또는 나무의사 1명+수목치료기술자 1명)	(설계·감리) 산림기술자 3명 이상 (시공) 산림기술자 7명 이상
사업범위	생활권 수목 중심(개체목 관리)	광범위 산림지역(대규모 방제사업)
방제방법	치료중심(약제·수간처리 등)	제거 중심(벌채·파쇄·소각 등)

※ 자료: 산림청

- 1)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7조(신고·보고 및 진단) ①재선충병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소나무류를 발견한 자는 산림청, 지방산림청,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읍·면·동사무소 등 인근 행정기관에 신속하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받은 행정기관은 재선충병에 대한 보고 및 진단을 하여야 한다.
③재선충병의 신고·보고 및 진단에 관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 2) 법적 근거 : (나무병원)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12조의9제1항 [별표 1의6] / (방제사업 설계·감리)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별표 4] / (방제사업 시공)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별표 2]

또한, 산림청에 따르면 제도 간 인력 운영 현황은 나무병원의 경우 등록 요건인 최소인원 2명으로 운영 중인 곳이 전체 나무병원의 90% 이상이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의 경우는 산림조합이 11명 이상,³⁾ 국유림영림단이 6명 이상 30명 이하,⁴⁾ 산림사업법인이 7명 이상으로 운영되며, 산림지역 대규모 방제⁵⁾로 추가 사업인력(보통인부, 특별인부, 벌목부 등)이 다수 투입되는 것으로 파악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방법으로는 예방사업(나무주사, 정밀드론·지상 약제살포, 매개충 유인트랩 설치)과 피해고사목등 방제(단목벌채, 강도간벌, 모두베기, 수종전환 방제)가 진행되고, 벌채산물처리는 파쇄·소각·매몰·박피·그물망 피복·훈증·열처리 등이 이루어지고,

나무병원에 의한 수목진료 방제는 병해충 방제제 살포·수간처리·토양 처리, 영양공급·수세회복처리, 뿌리수술·외과수술, 가지치기·수목정리, 줄당김·쇠조임 등 보호시설 설치 등이 수행됨.

따라서 개정안에 대하여는 나무병원의 수목진료 전문성을 활용하려는 입법 취지, 수목진료 및 방제사업 간 수행체계 차이, 그리고 형평성 저해 등 현행 산림사업의 업역 간 분리 원칙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반대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3) (산림청) 산림조합의 경우 법상 최소 인원수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11명 이상으로 조사됨.

4) 국유림영림단 등록요건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2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음.

5) 피해 발생: ('25) 149만 그루, ('26) 177만 그루 / 방제: ('25) 261만 그루, ('26) 309만 그루

IV. 입법의 재정영향

개정안에 대해서는 「국회법」 제79조의2제1항에 따라 비용추계요구서가 제출되었으나, 국회예산정책처는 동 법안이 시행되더라도 재정이 수반되지 않거나 재정부담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아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를 제출하였음.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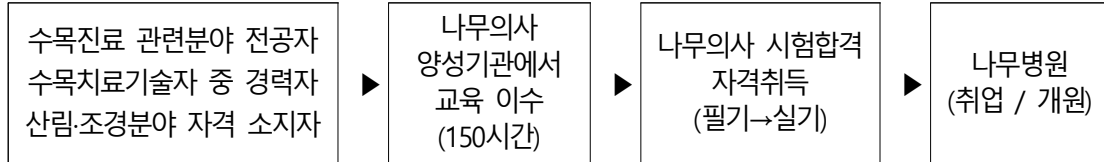
문 의 처
02)6788-5423

6)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는 재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법안뿐만 아니라 재정지출이 순감소 또는 재정수입이 순증가하는 경우와 같이 재정부담을 발생시키지 않는 법안도 포함됨(국회예산정책처, 법안비용추계 이해와 실제, 2024, p.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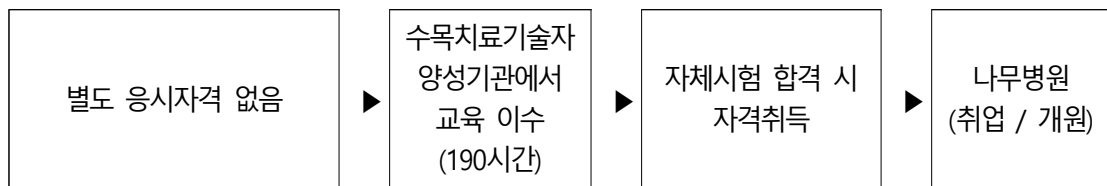
참고1

산림보호법령에 따른 나무의사 및 나무병원 제도

- (나무의사) 수목의 피해를 진단·처방하고, 예방·치료를 수행



- (수목치료기술자) 나무의사의 진단·처방에 따라 수목의 예방·치료를 수행



- (나무병원)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가 개원한 나무병원만이 생활권 수목 진료를 할 수 있도록 규정(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 (나무병원) 등록 요건

구분	'18.6.28.~'20.6.27.		'20.6.28.~'23.6.27.		'23.6.28일 이후
1종	· 나무의사 1명	⇒	· 나무의사 2명 또는 · 나무의사 1명 + 수목치료기술자 1명	⇒	· 나무의사 2명 또는 · 나무의사 1명 + 수목치료기술자 1명
2종	· 수목치료기술자 1명 또는 · 조경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1명	⇒	· 나무의사 1명 또는 · 수목치료기술자 1명		폐지

※ 자료: 산림청

참고2**나무병원 등록 및 나무의사 등 자격자 배출현황**

○ 나무병원 등록('26.3월말 기준)

(단위 : 개소)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3.
나무병원	896	1,439	1,296	1,356	1,426	771	872	942	1,015

* 2023.6.27. 2종 나무병원 운영 종료

○ 나무의사 및 수목치료기술자 배출 현황('26.3월 기준)

(단위 : 명)

구분	합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3.
합계	8,288	1,083	1,079	1,436	1,216	1,428	1,160	812	74
나무의사	1,737	52	237	250	367	477	174	180	-
수목치료 기술자	6,551	1,031	842	1,186	849	951	986	632	74

※ 자료: 산림청

참고3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관련 협회 및 단체 현황

구분	(사)한국나무의사협회	특수법인 한국산림기술인회	(사)한국산림기술사협회	(사)한국산림엔지니어링협회
설립근거	「산림보호법」 제21조의11	「민법」 제32조, 「농식품부 법인규칙」 제4조, 「산림기술법」 제13조	「민법」 제32조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민법」 제32조 및 「농식품부 법인규칙」 제4조
설립허가	2020년 11월 13일	2019년 1월 10일	2009년 3월 20일	2016년 7월 15일
설립목적	나무의사의 권익 향상과 복리 증진 및 수목진료 기술의 발전과 수목보호 및 수목복지 업무의 질적 향상을 통해 국민 보건과 국가발전에 기여	산림기술자의 품위유지 및 복리증진, 자질향상, 권익보호, 산림사업의 품질관리를 통하여 국가 산림기술진흥(연구·개발사업 등) 및 발전에 기여	협회는 회원의 품위유지와 상호 협력을 통하여 친목과 권익을 증진하고 새로운 산림기술개발과 보급으로 산림사업의 건전한 실행·발전·육성을 도모하여 회원의 권익증진 및 국민의 안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회원의 품위유지와 상호협력을 통하여 권익보호 증진을 도모 및 임업발전에 기여하고 국가 경제 발전에 공헌함
주요임무	○ 나무의사 권익 및 복지향상에 관한 사항 ○ 수목 복지 및 수목 진료에 관한 기술 개발·보급과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 수목 진료 정책, 연구·조사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나무의사 연수 교육 및 행정기관의 위탁업무에 관한 사항 ○ 학술지, 수목 진료 매뉴얼 등 수목 진료 관련 서적 발행 ○ 국제 정보교류 및 대외 협력, 홍보에 관한 사항 등	○ 산림기술자의 품위유지 및 자질향상을 위한 사업 ○ 산림기술자의 복리증진 및 권익옹호를 위한 사업 ○ 기술자단체의 보호·육성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유대강화 ○ 산림기술자 자격증 발급 및 경력신고, 경력증명서 발급 ○ 산림기술용역업 등록 및 실적신고, 실적증명서 발급 ○ 산림기술용역업자·산림사업시행업자·산림기술자 별점 종합관리 ○ 산림기술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및 산림기술자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등	○ 산림기술 향상을 위한 계획·연구·설계·분석·조사·시험·시공·감리·평가·진단·사업관리·기술판단·기술중재 또는 이에 관한 기술자문과 기술지도 및 정보수집 교류 ○ 산림 관계법령 제도 및 산림시책에 관한 연구와 개선 건의 ○ 산림기술자의 직무개발과 업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CPD교육 실행 ○ 산림의 경제적·공익적·생태적·환경적 가치가 높고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기반 조성을 위한 기술개발 및 지도 보급 ○ 정부(산림청 등) 공공기관, 지방자치 단체 및 기타 개인, 단체 등에서 위탁하는 사업 ○ 산림사업의 경영 합리화와 육성·발전에 대한 조사, 연구와 개선 건의 ○ 회원의 권익보호 및 복리증진 ○ 산지의 지속가능한 효율적 이용과 보전 및 보호와 복원·복구에 관한 사업 ○ 회지의 발행(1년 2회 04월 05일, 10월 18일 '산림기술사가 쓴 현장보고서' 발행) ○ 산림 관련 국내·외 정보자료의 수집 제공 및 보급 ○ 산림 관련 국제기관 및 외국산림단체와 국제협력 관계 증진 사업 ○ 산림보전 및 산림기술 관련 캠페인·방송 등 ○ 기타 협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 산림엔지니어링 사업의 대가기준 연구 및 개선 건의 ○ 산림분야 설계·감에 관한 법령제도 및 시책 등의 조사·연구·개선 ○ 산림분야 설계·감리에 관한 법령제도 및 시책 등의 조사·연구·설계·분석·조사·시험·시공·감리 등 ○ 산림엔지니어링기술자의 기술향상을 위한 지도 및 교육훈련 ○ 산림분야 학술연구 등 협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수행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기술자 교육

구분	(사)한국나무의사협회	특수법인 한국산림기술인회	(사)한국산림기술사협회	(사)한국산림엔지니어링협회
조직·인원	조직 : 본회 1개, 지회 9개, 연구소 1개	조직 : 본회 3본부, 연구원 1개, 교육원 1개, 시·도지회 9개, 업무분회 6개	조직 : 본회 1개, 지회, 9개 분회 -개	조직 : 본회 1개, 지회 9개, 분회 1개
구성원	○ 회원 : 1,534명 ○ 임원 : 정원 21명, 현원 21명 * 근거 : 정관 제16조(임원) ○ 직원 : 정원 4명, 현원 4명 *비상근 협회장 제외	○ 회원 : 13,203명, 회원사 : 1,390개 ○ 임원 : 정원 24명, 현원 20명 * 근거 : 정관 제16조 ○ 직원 : 정원 64명, 현원 31명(본회 17, 연구원 11, 교육원 3)	○ 회원 : 77명, 회원사 77개 ○ 임원 : 정원 22명, 현원 18명 * 근거 : 정관 제15조(임원) ○ 직원 : 정원 3명, 현원 3명	○ 회원사 130개 (정회원사 : 92개, 준회원사 38개) ○ 임원 : 정원 32명, 현원 24명 * 근거 : 정관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 직원 : 현원 5명(산림기술교육원 4, 사무국 1)
예산(26)	2,183백만원	3,655백만원(위탁회계 940백만원, 일반회계 1,665백만원, 산림기술연구 특별회계 1,050백만원)	340백만원	979백만원
소재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772, 3층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북로 121, 2층(둔산동, 아너스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134번길 29, 401호 (둔산동, 청사프라자)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은동로 79번길 71, 3층

※ 자료 : 산림청